

I. 국민제안

1. 동물의 독립적 생명성 명시로 동물복지 강화

제안명	「동물보호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- 제1조(목적) 개정을 통한 동물의 독립적 생명성 명시
실시 담당자	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(담당자: 이해연, 연락처: 044-201-2621)
실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중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시 예정 (예정일: '27년 12월)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미정
추진시기	제안일: '25년 6월 18일 / 채택일: '25년 8월 1일 / 실시예정일: '27년 12월 31일
접수경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민신문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 제안플랫폼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실 국민제안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우리나라 「동물보호법」 제1조에서는 법의 목적을 '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함'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인간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존재로 인식
 - 독일 법에서는 '인류의 동반 피조물인 동물'로 규정하여 동물을 자율적 생명체로 인식

□ 제안내용

- 「동물보호법」 제1조를 개정하여 동물을 독립적 생명체로 규정

AS - IS	⇒	TO - BE
· 「동물보호법」 제1조(목적)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,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<u>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,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	· 「동물보호법」 제1조(목적) 이 법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독립된 생명체인 동물의 생명보호,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기대효과

- 동물을 사육·관리 대상이 아닌 독립된 생명체로 표현함으로써 동물복지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동물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

□ 실시계획

- 동물 '보호'에서 '복지'로의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동물복지 이념 및 관련 법률*을 포괄하는 ^{가칭}「동물복지기본법」 제정 예정('27.)

* 동물보호법(농식품부), 야생생물법(기후부), 해양생태계법(해수부), 동물원수족관법(기후부·해수부) 등

2. '출장 동물미용업' 기준 마련

제안명	강아지출장미용에 대한 가이드를 주세요
실시 담당자	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(담당자: 변다연, 연락처: 044-201-2661)
실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중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시 예정 (예정일: '26년 12월)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미정
추진시기	제안일: '25년 8월 14일 / 채택일: '25년 9월 1일 / 실시예정일: '26년 12월 31일
접수경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민신문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 제안플랫폼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실 국민제안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에는 '고정된 장소'와 '자동차를 이용'하여 미용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시설요건만 규정되어 있음(별표11)
- 실질적으로 앱 등을 통해 '출장 동물 미용'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법으로 가능한 '자동차를 이용'한 미용의 이용빈도는 감소하는 추세

□ 제안내용

-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개정을 통해 '출장 동물미용업'에 대한 기준 마련

AS - IS	· 고정된 장소,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동물미용업이 가능하나, 낯선 장소에서의 미용은 반려동물에게 심리적 불안으로 작용	→	TO - BE	· '출장 동물미용업'을 통한 익숙한 장소에서의 미용으로 반려동물의 안정감 강화
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□ 기대효과

- 안정적인 미용 환경 조성을 통한 동물복지 강화 및 출장 동물미용업의 합법화 기반 마련

□ 실시계획

- 동물미용업자의 영업 범위를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거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진행 중('26.3.~)
- 영향평가 및 국조실 사전규제 심사(6월) → 입법예고(40일) 및 규제심사(7~8월) → 법제처 심사(10월) →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(12월)

3.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방역조치 개선으로 방역관리 효율화

제안명	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권역화 방역조치(4대 권역 돼지·분뇨 이동제한) 개선으로 방역관리 효율화
실시 담당자	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(담당자: 손지현, 연락처: 044-201-2538)
실시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시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예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미정
추진시기	제안일: '25년 10월 29일 / 채택일: '25년 11월 26일 / 실시일: '25년 12월 1일
접수경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민신문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 제안플랫폼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실 국민제안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'19.9월 ASF 발생 이후 ASF 위험지역을 권역화(4대 권역, 84개 시군)하여 5년째 권역 내·외로의 돼지와 분뇨 이동제한 및 돼지 이동 시 정밀검사를 의무화
- 권역화 검사에 많은 예산·인력이 투입되나, 무작위 검사를 통한 예찰에 한계*가 있고, 검사물량 가중에 따라 축산농가는 돼지 출하 지연 등의 상황이 지속 발생
 - * 매년 약 20만건 검사(ASF 예찰 물량의 70% 이상)로 지방정부 방역부서 업무 가중

□ 제안내용

- ASF 권역화 방역관리제도('19년 도입)를 현재의 위험도*와 질병 특성에 맞도록 개선하여, 효율적인 ASF 방역 추진 및 축산농장의 어려움과 지방정부 업무 부담 해소
 - * 19년 이후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감소 추세 : ('19) 2.29마리/Km2 → ('24) 0.96

AS - IS	·(돼지) 연중 4대권역 내·외로 돼지 이동 시 정밀검사 의무 * 모든 전두수 및 비육돈 10두 정밀검사 ·(분뇨) 권역 외로는 분뇨 이동 불가	⇒	TO - BE	·(돼지) 고위험 기간에만 위험권역에 한해서 적용하고, 검사방식 개선* * 모든 10두는 정밀검사, 비육돈 임상예찰로 전환 ·(분뇨) 인접 시군에 한해서 정밀검사 후 이동승인
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□ 기대효과

- 연간 권역화 정밀검사 물량 감소(약 50%, 10만건 예상)로 예산 절감
 - * 10만건 ASF 검사 시, 검사 재료비에만 약 30억 소요
- 사육돼지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한 시군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여 ASF 발생 위험도에 따른 효율적인 방역관리 추진
 -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(돼지 채혈 인력 부족) 문제 개선, 분뇨 이동제한 및 돼지 출하 지연에 따른 양돈농가의 경영 악화 방지 효과

□ 실시내용

-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완료('25.12월)

4. 식품 사막화 대응으로 식품기본권 보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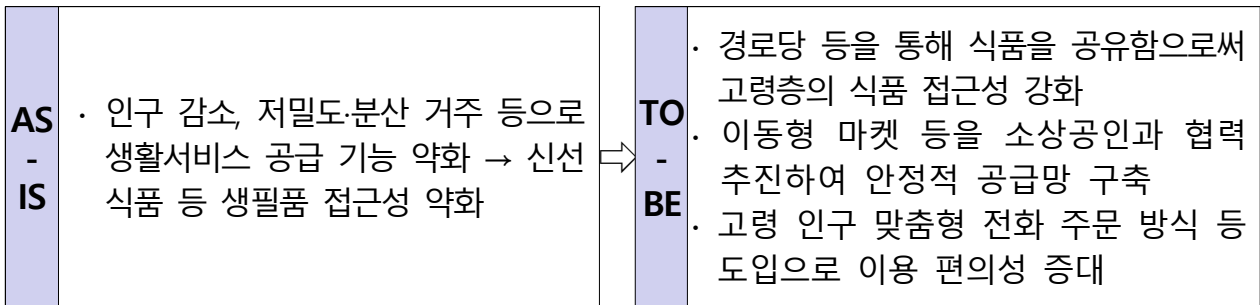
제안명	식품 사막화 대응
실시 담당자	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(담당자: 이은진, 연락처: 044-201-1548)
실시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시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예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미정
추진시기	제안일: '25년 11월 11일 / 채택일: '25년 12월 22일 / 실시일: '25년 12월 22일
접수경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민신문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 제안플랫폼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실 국민제안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농촌과 일부 도시 지역은 식료품점 부재, 새벽배송 서비스 미지원 등으로 식품 사막화가 심화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저하 우려
 - * 전국 행정리(3만7,563곳) 중 2만7,609곳(73.5%) 식료품 소매점 부재(2020,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)
- 식품 사막화 대응을 위해 정부·지자체에서 이동장터,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

□ 제안내용

- 경로당, 마을회관 등 지역 커뮤니티 거점을 식품 공동 보관 및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, '이동형 마켓', '공공 배송망' 등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
- 고령 인구 맞춤형 주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 편의성 극대화



□ 기대효과

- 고령층의 먹거리 접근성 강화로 건강권을 보장하고, 소상공인 연계형 정책 추진을 통해 안전한 식품 공급망 형성

□ 실시내용

- 농식품부는 '25년부터 농촌 배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식 생필품 판매 서비스인 '찾아가는 이동장터*' 추진 중으로, 시·군의 사업계획 수립 시 제안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전문가 자문을 지원('25.12.~, 계속)

*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(농촌중심지활성화, 기초생활거점조성) 재원 연계

5.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

제안명	우리나라 농업경영체에 대하여
실시 담당자	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(담당자: 정훈기 연락처: 044-201-1417)
실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중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시 예정 (예정일: '28년 12월)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미정
추진시기	제안일: '25년 12월 23일 / 채택일: '26년 1월 14일 / 실시예정일: '28년 12월 31일
접수경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민신문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 제안플랫폼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실 국민제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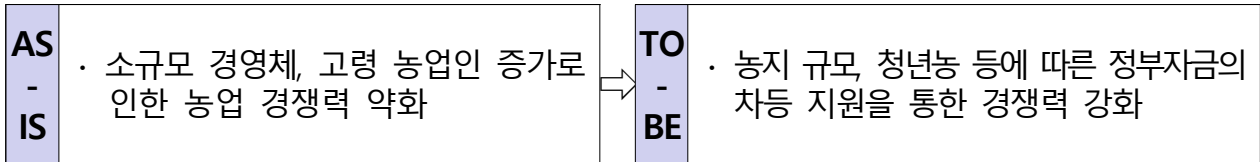
□ 현황 및 문제점

- '25년 농가수는 약 97만이나 농업경영체 등록건수는 183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업의 경쟁력 약화. 규모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

* (농가수) '20년 104만 → '24년 97(△5.9%), (경영체수) '20년 173만 → '24년 184(+5.3%)

□ 제안내용

- 고령화,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하여 농지 규모·농업소득 수준·연령대 등을 구분하여 정부자금을 차등 지원하고, 소규모 경영체는 집적하여 규모화 추진



□ 기대효과

- 고령화, 지방 소멸 등에 따른 농업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국민 먹거리 제공
 -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, 스마트농업 육성, 인공지능 활용한 농기계 자동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
 - 품목별 농지 규모, 농업소득 수준, 공동경영 등을 고려한 전문농업경영체를 정의하고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농림사업 자금 차등 지원
-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고도화하여 농식품 산업과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

□ 실시계획

-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과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연구용역(~'26.12월)
- 관련 단체, 전문가 등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 검토(~'28.12월)

6. 농어촌민박 사전거주 요건 완화로 인구감소 지역 귀촌 활성화

제안명	농어촌정비법 제86조 사항 개선 요청
실시 담당자	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(담당자: 김서진, 연락처: 044-201-1591)
실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중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시 예정 (예정일: '26년 12월)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미정
추진시기	제안일: '26년 1월 8일 / 채택일: '26년 4월 2일 / 실시예정일: '26년 12월 31일
접수경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민신문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 제안플랫폼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실 국민제안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·군·구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함
- 젊은 사람들이 전입·임대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해도, 전입 후 즉각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불가
- * 농어촌민박 사전 거주 요건: 본인 소유 주택(6개월), 임차 주택(3년)

□ 제안내용

- 관할 시·군·구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했던 요건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,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반 마련

AS - IS	⇒	TO - BE
· 사건 거주 요건(임차 주택 3년)으로 인해 전입·임대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진입 장벽		· 전입·임차 농어촌민박 운영 관련 사전 거주요건 완화로 젊은 사람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□ 기대효과

- 젊은 사람들이 농어촌으로 이전하여 단시간에 농어촌민박 임대사업 운영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인구 증가 등에 기여

□ 실시계획

- 농어촌민박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「도농교류법」 개정안* 발의 ('24.11.15., 이만희 의원 대표 발의)되어 현재 상임위 계류 중('25.2.18.~)

* 농어촌민박 제도를 「농어촌정비법」에서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

7. 면세유 지원기준 완화로 농가 경영 안정성 제고

제안명	농업용 렉스턴 칸 화물차량 면세유 지원기준 완화 제안
실시 담당자	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(담당자: 박정은, 연락처: 044-201-1718)
실시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시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예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미정
추진시기	제안일: '26년 1월 12일 / 채택일: '26년 2월 12일 / 실시일: '26년 1월 19일
접수경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민신문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 제안플랫폼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실 국민제안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2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 제도
- 화물자동차는 「영농기자재면세규정 시행규칙」 별표 2의 제45호에 따라 농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로 등록 가능
 - 기존에는 루프탑 텐트 등 레저용 시설이 설치된 화물자동차의 경우, 농업 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 영농에 사용하더라도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록에서 제외

□ 제안내용 (개선방안)

- 화물자동차에 레저용품이 설치되어 있더라도, 실제 농업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, 농업용 면세유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준 완화
 - 관련 법*에 따라 적법하게 튜닝된 화물자동차로서, 적재공간의 바닥면적 기준**을 충족하고 화물 적재 기능이 유지되며,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화물자동차로 등록

* 「자동차관리법」 및 동법 시행령, 「자동차의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

** 최소 2㎡ 이상(경형 화물자동차 중 초소형 화물자동차는 1㎡ 이상)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1)

AS - IS	⇒	TO - BE
· 레저용 시설이 설치된 화물자동차는 실제 영농에 사용하더라도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록에서 제외		·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튜닝되고 적재 공간의 바닥면적 기준과 화물 적재 기능을 유지하면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,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 가능

□ 기대효과

- 차량에 설치된 시설이나 용품만을 기준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등록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던 불합리한 기준 개선
-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면세유 공급대상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유류비 부담 완화

□ 실시내용

-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 세부지침 개정·시행('26.1.19.~)

8. 도시 유희인력 유입을 위한 '일과 휴식이 결합된 체류형 모델' 도입

제안명	도시 유희인력 유입을 위한 '일과 휴식이 결합된 체류형 모델' 도입
실시 담당자	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(담당자: 박정진, 연락처: 044-201-1722)
실시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시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예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미정
추진시기	제안일: '26년 1월 14일 / 채택일: '26년 2월 23일 / 실시일: '26년 6월 9일
접수경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민신문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 제안플랫폼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실 국민제안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농촌인구 감소, 고령화* 등 농업 인력난 가속화로 **외국인력**** 유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, **국내인력 공급은 감소하는 양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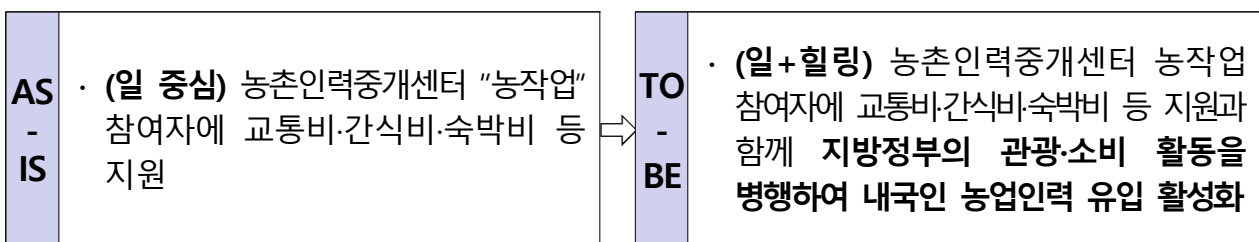
* 농가인구/65세 이상 비율 : ('10) 306만명/32% → ('20) 231/42 → ('24) 200/56

** 외국인력(E8도입/E9체류) : ('23) 2.9만명/2.9 → ('24) 5.2/3.3 → ('25) 7.7/3.5 → ('26.上 배정) 9.3/1

- 예측·통제가 어려운 해외변수(팬데믹·송출중단 등)에 의해 인력공급 차질을 겪는 경우에 대비하여 도시민·청년 등 **국내 유희인력 유입 활성화 필요**

□ 제안내용

- 도시 유희인력의 인건비는 농가가 직접 부담하고, **숙식·체류·교통 등 참여 장벽을 낮추는 비용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역할 분담** 구조 마련
- 이와 더불어 체류 기간 중 **지역 명소·유적·로컬 체험을 선택형으로 연계하여 참여자에게 '일+힐링' 프리미엄을 제공함으로써 구인 모집·재참여율 제고**



□ 기대효과

- 농업 분야 내국인(농촌인력중개센터) **농업인력 공급 연인원 확대** 기대
- 국내인력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**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식량안보에 기여**

□ 실시내용 및 계획

- 지방정부 도농인력이음(농작업·소비·관광 모델) 우수 정책 공모(6~10월)
- 우수사례 발표회(1차: 국민투표, 2차: 발표평가)를 통해 우수정책 발굴·전국 확산(12월)

9. 가축방역법상 외국인 고용 신고 절차의 부처 간 통합 및 간소화

제안명	가축방역법상 외국인 고용 신고 절차의 부처 간 통합 및 간소화 제안
실시 담당자	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(담당자: 손지현, 연락처: 044-201-2538)
실시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중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시 예정 (예정일: '27년 3월)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미정
추진시기	제안일: '26년 1월 29일 / 채택일: '26년 4월 17일 / 실시예정일: '27년 3월 31일
접수경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민신문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 제안플랫폼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실 국민제안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축산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「외국인고용법」에 따른 고용신고를 완료하더라도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5조 3항에 따라 별도의 신고(이메일, 팩스) 필요
- 시군 방역부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라 해당 축산농가에 과태료 부과(300~1,000만원)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(10%) 등 조치

□ 제안내용 (개선방안)

- 고용노동부의 고용 변동 데이터를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방역통합시스템(KAHIS)을 연계하여,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신고 간소화

AS - IS	·(신고)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후 시군 방역부서에 중복신고 ·(교육) 농장주가 외국인근로자 방역교육 실시	⇒	TO - BE	·(신고) 부처 시스템 연계로, 축산농가의 외국인근로자 중복 고용신고 부담 해소 ·(교육) 시군 방역부서가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정보를 받아, 근무 전 방역교육* 실시 *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
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□ 기대효과

-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(300~1,000만원)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*(10%) 등 경제적 피해 개선
 * (예) 5,000두 사육규모 양돈농장을 기준으로, 농가당 살처분 보상금 약 1.5억 감액
- 시군 방역부서 담당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,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차단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효율성 제고

□ 실시계획

- **(시스템 기능 개선)**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시스템 연계 및 가축방역통합시스템(KAHIS) 기능 개선('26.3~8월)
- **(제도 개선)**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 개정* 추진('27.3월 완료 예상)
 * (개정내용) 관계기관(고용부)으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정보가 가축방역통합시스템(KAHIS)에 등록된 경우 고용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

II. 공무원제안

1. 공공비축 검사장소 안전사고 대비 안전대책 강화

분야 구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일반제안 <input type="checkbox"/> 협업제안
제안명	공공비축 검사장소 안전사고 대비 안전대책 강화
실시 담당자	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(담당자: 이하나, 연락처: 044-201-1817)
실시여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실시 중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예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 미정
추진시기	제안일: '25년 7월 30일 / 채택일: '25년 9월 4일
접수경로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국민신문고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 제안플랫폼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통령실 국민제안

현황 및 문제점

- 협소한 수매현장 내 다수 인력, 장비 등이 혼재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
- 수매 참여 농업인 및 공무원 사고 발생 시 배상 문제 발생
 -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비 등 민사상 배상 책임이 개인 혹은 기관에 집중

제안내용 (개선방안)

- 사전 모니터링 및 안전 대책 수립
 - 수매 전 참여 대상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체크리스트 의무화
 - 수매현장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등 안전대책 수립(지자체)
- 사고발생 시 보험사 자동처리 시스템 연계로 공무원 등 부담 완화
 - 농식품부, 농협경제지주와 협업체 보험 단가 등 공동구매 방식 추진

기대효과

- 수매 현장 사고 예방 효과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 처리
- 사고발생 시 신속한 업무처리로 공무원 및 기관의 법적 리스크 완화
- 농업 현장의 산업 재해 방지 등 현장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

실시내용 및 계획

-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 안전사고 예방 수칙 안내(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, 시행 중)
- 안전 교육 영상 제작, 교육 실시 여부 체크리스트 작성,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적에 따른 지자체 평가 강화 등 보완책 검토(~'27)